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3.9.4(수) 10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헌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8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 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나. [별표 2]의 대상을 '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·도에 소재한 기업'으로 규정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 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, [별표 2]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